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9

제출년월일 : 2002. 10.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 효율성을 위해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및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위원회 기능활성화 도모와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주 요 골 자

【 주민자치센터 운영 】

- 가. 자치센터의 읍·면·동사무소별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제4조)
- 나. 주민자치기능 및 지역사회진흥기능의 우선적 수행 (제5조)
- 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제7조)
- 라.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 (제10조)
- 마.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제11조)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바.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확대 등 (제15조, 제16조)

사.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 (제17조)

아.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제18조)

자.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 (제20조)

차. 현 주민자치위원 임기보장,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다른
경우 조례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변경 등(부칙)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군내출장소(이하 “읍·면·동사무소”라 한다)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읍·면·동사무소별 명칭은 “○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권리, 의무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 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자치센터의 명칭변경)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341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이 한 원
	주민자치추진팀장	서 천 하
	담 당 자	한 성 희

【별 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 무 료

2. 수강료

구 분	기 준 (과목당1주 수강시간)	수 강 료 (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7시간 이하	18,000원 이하	
	9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35,000원 이하	
생활체육	5시간 미만	25,000원 이하	
	5시간 이상	35,000원 이하	

3.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구 분	감면비율	감 면 대 상
수강료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경로연금 지급대상자 •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군내출장소(이하“읍·면·동사무소”라 한다)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군내출장소(이하“읍·면·동사무소”라 한다)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1. (현행과 같음)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u>직능·자생단체</u> ,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u>직능·자생단체</u> ,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2. ----- --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						
								○ NGO 등 민간단체 포함 명확화

현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배제	제3조(원칙) (현행과 같음)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읍·면·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읍·면·동장, 군내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4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 유사 시설기관과의 혼동 방지 ○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의 명확한 전달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신 설)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분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제5조(기능) ① --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현행과 같음)						
	②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						○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읍·면·동사무소의 자율성 확대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읍·면·동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조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 ----- -----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						○ 시설 설치의 주체를 시장으로 하고, 애매한 문구의 명확화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자치센터 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 완화 및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신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 ----- -----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 유도
		○ 자치센터 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지원으로 민간 참여 활성화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치센터 운영비 등 재정지원 원칙 제시로 건전한 발전 도모			
(신 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현행과 같음)			○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 운영 근거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강사) (현행과 같음)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정수할 수 있다.						○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회비는 비공식적인 언어로서 제외)
(신 설)	(신 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정수한다.						○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정수주체 명확화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의 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의 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사용료 등의 정수범위와 요율 결정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 강화 -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유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 사용료 등 징수시 일정 이용자에게 대한 감면 근거 마련
(신 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만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자치센터 운영재원 자체 확보 능력제고 ○ 읍·면·동장과 협의를 전제로 주민 자치위원회가 사용주체가 되도록 하여 자율성 확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용료</u>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 ----- ④ (현행과 같음)	⑦ 읍·면·동장은 “<u>사용료</u>”의 징수 ·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u>수강료</u>”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 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u>수강료</u>”의 징수·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 “수강료”의 경우 징수·관리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감안하여 별도의 회계책임자 지정 및 위원회 명의로 수행토록 제도화 ○ 자치센터 및 시설이용자 등의 권리, 의무 등을 범조화 ○ 사용료 등의 납부는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에 한함을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현행과 같음)			○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u>1월전까지</u>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u>1월전까지</u>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 ----- <u>3월전까지</u> ----- ----- -----		제14조(보고) ① ----- ----- <u>3월전까지</u> ----- ----- -----				○ 예산편성, 심의 등 일정을 감안하여 보고기한 조정
② 읍·면·동장은 <u>자치센터 운영에</u>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위원회의 <u>심의를 거쳐</u>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u>자치센터 운영에</u>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위원회의 <u>심의를 거쳐</u>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u>제10조에 의한</u> <u>사용료 등</u> <u>자치센터 운영에</u> 따른 ----- ----- <u>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u> 에 -----		② ----- <u>제10조에 의한</u> <u>사용료 등</u> <u>자치센터 운영에</u> 따른 ----- ----- <u>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u> 에 -----				○ 사용료 등의 수입·지출내역 포함 명확화 및 보고기한 명시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u>심의하기 위하여</u>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u>심의하기 위하여</u>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5조(설치) ----- 운영에 ----- <u>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u> -----		제15조(설치) ----- 운영에 ----- <u>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u> -----				○ 위원회의 관여범위를 “자치센터 운영”으로 명확화하기 위하여 “등”을 제외 ○ 원칙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나 부분적으로 의결·집행기능 부여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 운영에 -----						○ 위원회의 관여범위 명확화를 위해 “등” 제외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 위원회의 의결기능 대상 범위 제한적 명시
(신 설)		③ 위원회에서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제17조(구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다.		제17조(구성) ① ----- -----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분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제고 ○ 고문제도 신설 및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 가능 ※ 임의적 규정이므로 시의원이 원치 않는 경우 미위촉 가능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u>턱마당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u> (신설) (신설)	② ----- ----- -----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 위원 위촉시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도입으로 공정성 제고 ○ 위원 자격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강화
③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계각층 예시에 "경제계", "일반주민" 포함 ○ 어느 한 계층이 속한 위원이 1/3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균형성 유지 ○ 여성위원의 경우 자치센터 이용자가 대부분 주부인 점을 감안하여 1/3 이상이 되도록 권장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위중에서 호선한다.		④ -----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관 주도가 아닌 순수한 주민자치의 기능 제고
(신 설)		⑤ 고분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적이 아닌 고분을 위촉하는 경우 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역량이 높은 자를 위촉 한다.						○ 고분에 대한 위촉권지(읍·면·동장) 및 당연적이 아닌 고문의 자격요건 명시
(신 설)		⑥ 읍·면·동장은 고분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게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분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고문, 위원 등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u>의 임기는 2년</u> <u>으로 하되</u>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 ---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주민참여기회 확대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고문의 역할 명시로 위원과 차별화
(신	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 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로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도모 및 자치센터 관리 인력 부족 현상 보완

현	개	개
행	정	정
사	안	유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현행과 같음)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 -----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해촉대상에 위원 이외에 고문 포함 ○ 해촉사유가 주관적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 ○ 당연직 고문 해촉의 경우 해촉사유 제한 및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신 설)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u>위원의 임기</u> 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3. 스스로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② -----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3. 스스로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② -----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3. 스스로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② -----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3. 스스로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② -----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3. 스스로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② -----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3. 스스로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② -----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3. 스스로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② -----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④ <u>고분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u>				○ 고분의 표결권 여부 명확화
(신 설)				⑤ 읍·면·동장은 <u>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u>				○ 읍·면·동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권 명확화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u>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u> 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 간사는 ---- -----				○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 확대
	제23조(실비보상 등) <u>위원</u> 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등) <u>고분</u> 을 포함한 <u>위원</u> 은 ---- -----				○ 실비보상 대상에 고분 포함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우너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체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등)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	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현행과 같음)					
부	척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②항제3호중 “각종 선거사무”를 “각종 선거사무 및 주민자치센터운영”으로 하고, 제20조중 “통·반조직운영등”을 “통·리반 조직운영 및 주민자치센터운영등”으로 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현행과 같음)					
(신	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보장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③(자치센터의 명칭변경)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 자치센터의 명칭 변경시 1년의 유예 기간 설정으로 혼란 최소화